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7. 3. 7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2.23.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17.2.27.
다. 상정일자 : 제21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7.3.7.)

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 : 보건행정과장 서문석

가. 제안이유

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, 안정적 추진과 주민 참여 활성화, 대내외 협력 체계 구축 기반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 - 2) 건강도시 기본사업 및 계획 수립(안 제3조 및 제4조)
 - 3)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(안 제5조 ~ 제9조)

- 4) 주민참여(안 제10조)
- 5)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(안 제11조)
- 6)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(안 제12조)
- 7) 다른 조례의 개정(안 부칙 제2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사업의 내용과 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,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, 안정적 추진 및 구민참여 활성화와 대내외적 협력 체계 구축기반 조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건강도시 사업은 1986년 세계보건기구 유럽 및 북미 지역사무국에서 16개 나라 30여개 도시에서 시작하였으며, 2016년12월 말 현재, 전국 86개 도시가 WHO(World Health Organization)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.

건강도시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 ·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,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구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건강증진을 통한 진정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.

○ 조례안 제2조 제목의 “(용어의 정의)”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“(정의)”로, 같은 조 제1호 “건강”에 대한 정의는 WHO에서 정의한 개념에 따라 “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.”로 하고, 안 제3조 각 호외의 본문을 다시 정리하여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”로 각각 수정을 요함.

안 제5조의 제목 “(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은 “(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.”는 위원회는 질문에 대답하는 입장이므로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”로 하며,

안 제6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회 위촉 대상 위원인 “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”은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”를 “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”로 하며, 안 제9조의 본문을 정리하여 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안 제11조제2항은 표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“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, 단체 등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”로 하며, 안 제13조는 조문을 정리하여 “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